

배포 일시	2022. 8. 24.(수)		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주택기금과	책임자	과장	정진훈 (044-201-3337)
			담당자	사무관	배기훈 (044-201-3339)
		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	책임자	단장	이경석 (044-201-3589)
			담당자	사무관	김동환 (044-201-3590)
		주택임대차 지원팀	책임자	팀장	박동주 (044-201-3321)
			담당자	사무관	채한규 (044-201-3314)
	민간임대 정책과	책임자	과장	정천우 (044-201-4100)	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아 (044-201-4477)	
	경찰청	경제범죄 수사과	책임자	총경	김종민 (02-3150-2037)
			담당자	경정	김현수 (02-3150-2468)
	주택도시 보증공사	채권관리실	책임자	실장	정보윤 (051-955-5810)
			담당자	팀장	민기식 (051-955-5811)
한국부동산원	시장관리처	책임자	처장	장우석 (053-663-8610)	
		담당자	부장	최문기 (053-663-8611)	
보도일시	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4.(수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		

국토부, '전세사기 의심정보' 1만4천 건 경찰청과 공유 - HUG 악성 보증사고,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 사례 등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총 13,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(청장 윤희근)에 제공했다고 밝혔다. 이번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.
-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·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, 전세사기 사례 공유·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.
-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하여 경찰청과 공유하였다.

□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제공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,353건(임대인 총 200명, 대위변제액 총 6,925억원)

- 이 중 2,111건(임대인 총 26명, 대위변제액 총 4,507억원)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함

②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(과태료 최대 3천만원)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(등록임대주택 378호)

③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*되거나, 경찰이 단속·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0,230건(임대인 총 825명, 보증금 총 1조 581억원)

*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·매도, 전세가율 100% 이상 다주택 계약 사례 등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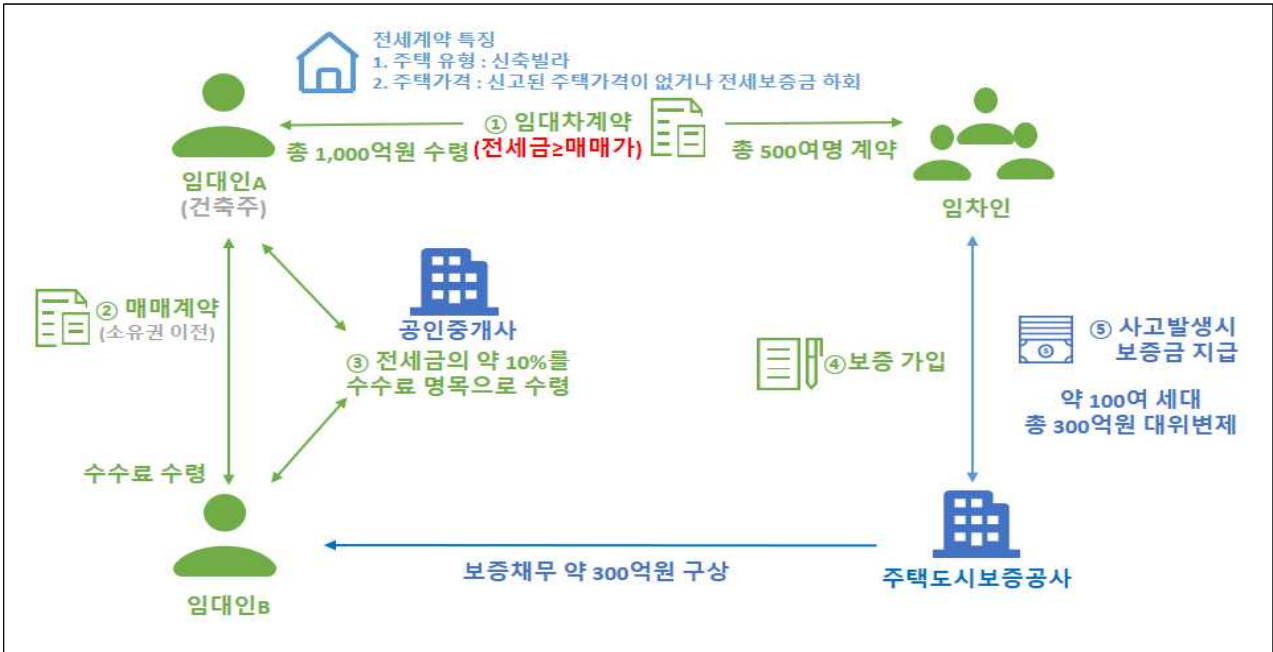
○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, 새로운 사안도 적발,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<붙임> 국토부 분석 전세사기 의심사례 예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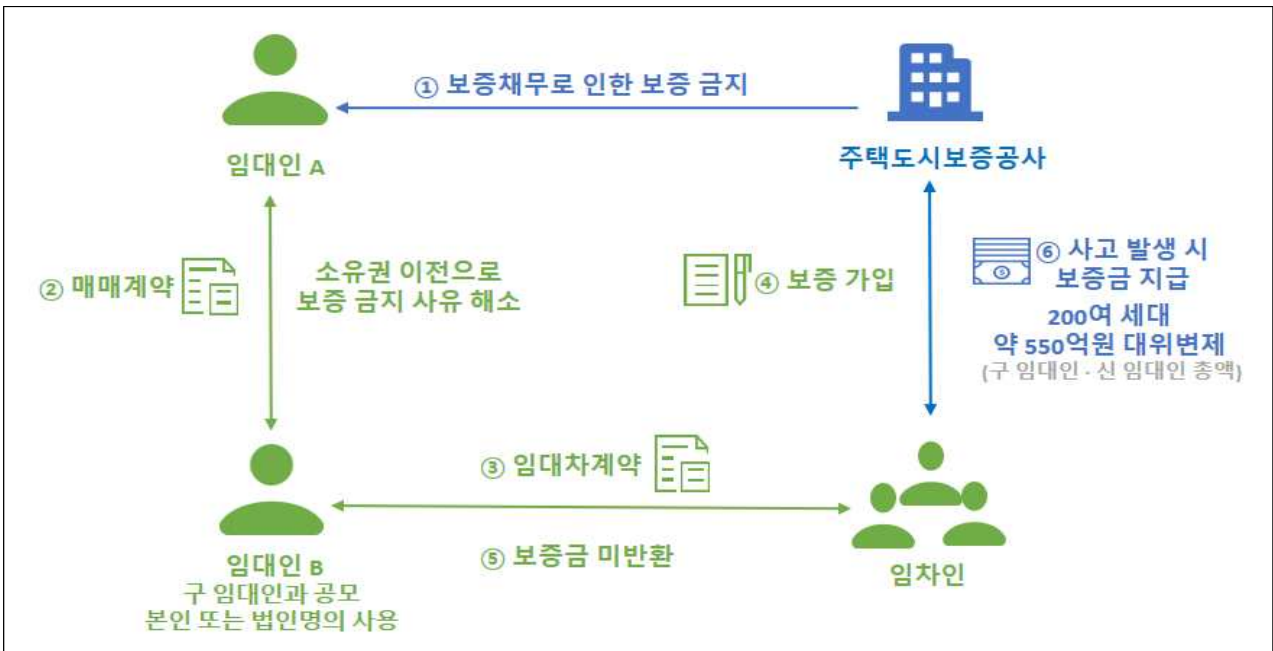
국토부 분석 전세사기 의심사례 예시

【 사례 ① :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사례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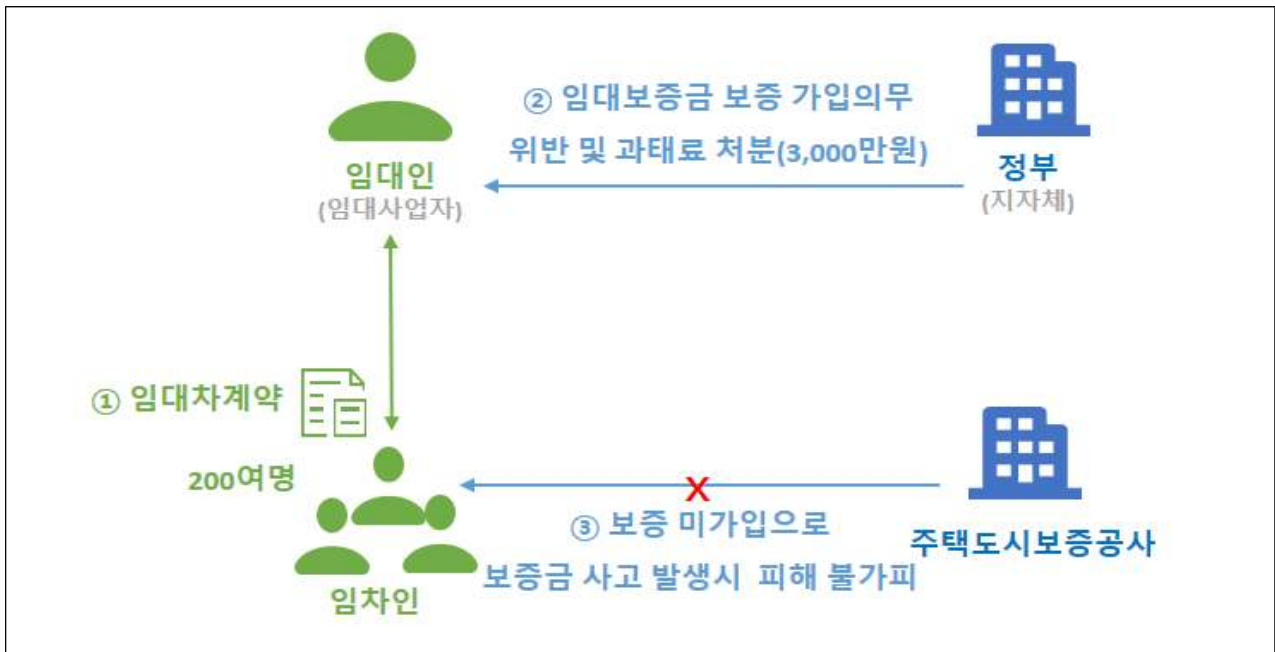
-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,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,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

【 사례 ② : 명의이전을 통한 보증 돌려막기 사례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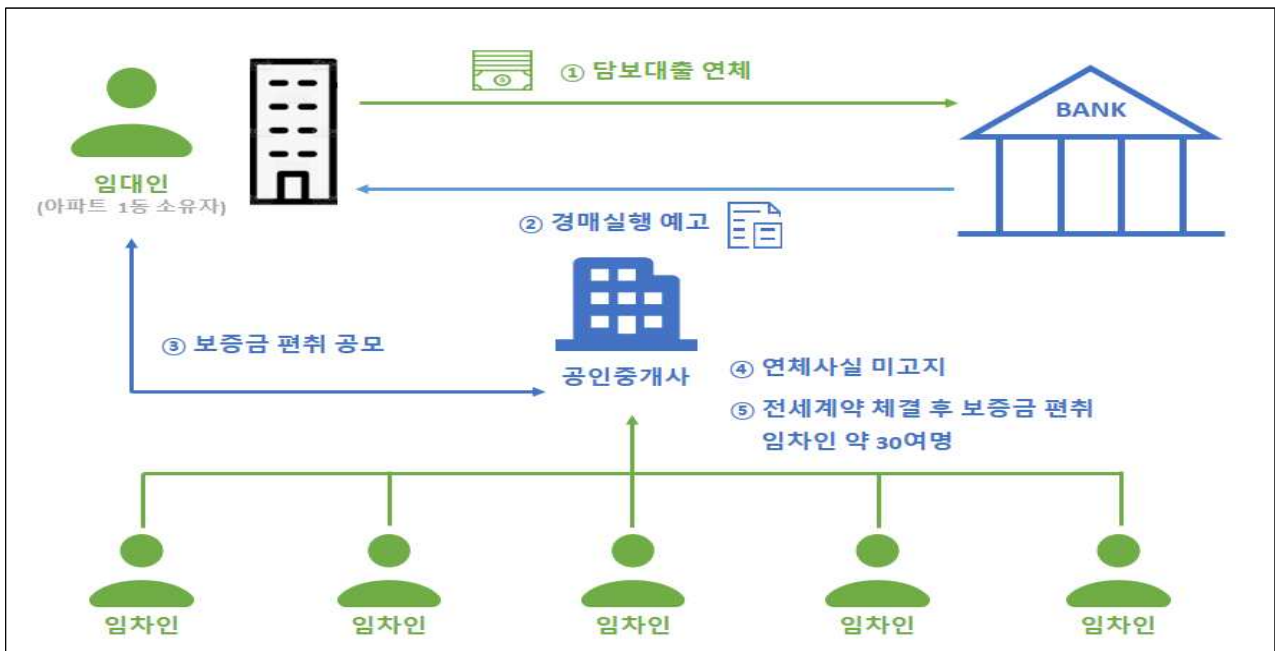
- 임대인 A씨는 악성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되어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, 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, 지인 B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

【 사례 ③ : 보증가입 의무위반 임대사업자(다수 주택 보유) 사례 】



- 임대사업자 A법인은 주택 200여 세대를 임대하고 있으나, 「민간임대특별법」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약 3,000만원 부과

【 사례 ④ : 담보대출 연체 사실 미고지 후 보증금 편취 】



-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A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, 공인중개사와 공모,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편취